

#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78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년 8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‘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’ 를 지정·고시(2020.8.28.) 하였음.
- 나. 이에,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,
- 다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나. 사 무 명 :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

다. 출연근거
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제58조, 제58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의2

제18조의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‘기술-창업-성장’ 이 선순환하는 소규모,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홍릉 강소특구 육성 추진사업비 지원이 필요

마. 주요사업 내용

-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(연구소·대학)이 보유한 원천기술 등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 보유기술의 애로사항 해결
-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제품 개발 지원,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바. 출연대상 기관개요

- 기 관 명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- 설립목적 :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
- \*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, 연구소기업·창업 성장지원,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

- 설립근거 :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
- 소재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(도룡동 4-27)
- 법인설립 : 2005. 9. (유형: 준정부기관)
- 조직 : 11본부(11실, 20팀), 1부(1팀) / 정원 174명

#### 사. 소요예산(안) 및 산출근거

- 총 소요예산 : 3년간 2,700,000천원(연 평균 900,000천원)
- 산출근거 :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의 40% 이상 매칭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2023	2024	2025
출 연 금	2,700,000	900,000	900,000	900,000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**제12조(특구육성사업의 추진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(이하 “특구육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하고,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·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특구 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,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8조2(출연 및 보조금)**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○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18조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‘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’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이하 “특구진흥재단”)에 출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<sup>1)</sup>를 받고자 제출됨.

### 나.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현황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“과기부”)는 2020년 8월 의료 관련 전문기관이 집적한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컬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(이하 “홍릉특구”)를 지정함.<sup>2)</sup>
-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홍릉특구는 과기부(특구진흥재단)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, 기술핵심기관<sup>3)</sup>이 기술개발과 임상연구,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며, 서울시는 배후공간<sup>4)</sup> 관리와

---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홍릉 지역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구중심병원인 고려대의료원, 양·한방 융합 의료기관인 경희대의료원이 자생적으로 집적하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(2020.8.)되어 지역 내 산·학·연 연구개발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바이오 산업 관련 창업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.

3) 기술핵심기관 : 공공연구기관 중 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기타기관(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) 4개 유형임(KIST, 고려대, 경희대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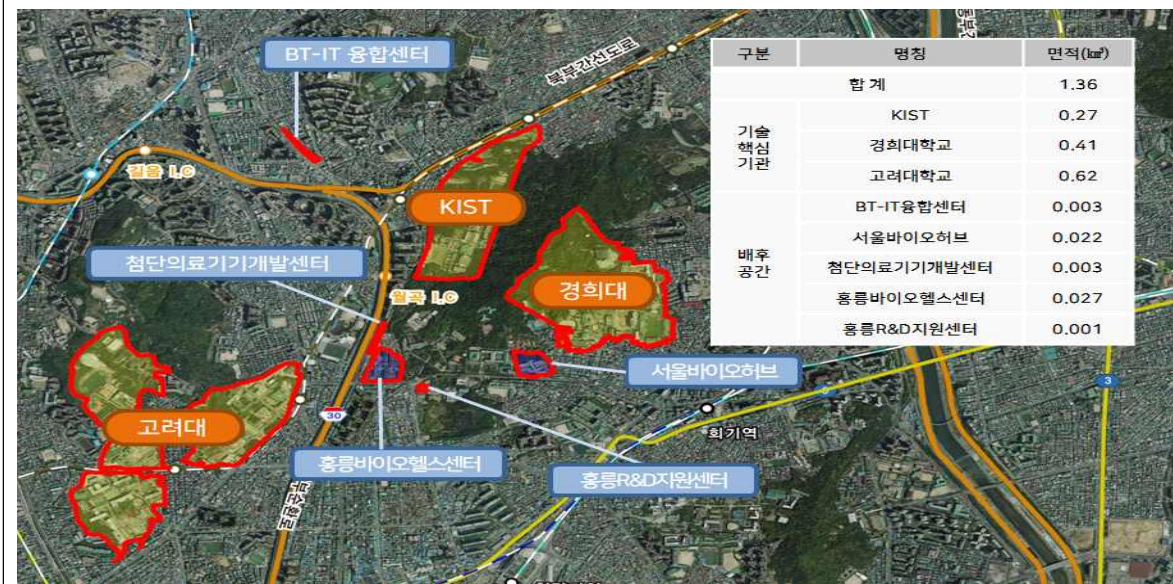
4) 배후공간 :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함.

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음.

- 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, 연구성과의 사업화, 연구소·기업의 창업·성장 지원, 기반시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### <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>

- 특화분야 : 디지털 헬스케어
- 기술핵심기관 :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, 경희대, 고려대
- 배후공간 : 서울바이오허브, BT-IT융합센터,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, 홍릉 바이오헬스센터, 홍릉 R&D 지원센터
- 범 위 : 서울시 성북구, 동대문구
- 면 적 : 1.36km<sup>2</sup>(기술핵심기관 1.30km<sup>2</sup>, 배후공간 0.06km<sup>2</sup>)
- 2023년 홍릉특구 사업예산 : 29억원(국비 20, 시비 9)
- 사업구조



- 지난해 홍콩특구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, 기술이전(27건), 연구소 기업설립(12개), 일자리 창출(157명) 등 6개의 성과지표 모두 초과 달성함.
- 다만, 올해 성과목표 설정 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축소·조정된 것으로 나타나, 성과관리의 점검과 환류 측면에서 사업목표의 재설정과 실적반영 노력 등이 요구됨.
- 특구진흥재단에서 설정하고 있는 성과목표 기준을 투입예산액에 맞추어 산정함에 따라 전년 예산(72억원) 대비 올해 출연한 국·시비 예산(57억원) 감소를 이유로 성과목표치를 과다 하향 조정함.

### 〈홍콩 강소특구 사업 성과목표 및 실적〉

성과지표	'21년 목표	'21년 실적	'22년 목표	측정산식
기술이전	20건	27건	13건	기술이전사업화 과제 지원, 연구소기업 설립 등으로 기술이전·출자된 실적
연구소기업설립	7개	12개	5개	당해연도 연구소기업 신규 설립 수
신규창업건수	10건	42건	7건	특구육성사업을 통해 발생한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수
매출액	45억원	67억원	32억원	사업지원 기업 및 창업기업의 당해연도 매출액
일자리 창출	60명	157명	43명	사업 지원기업, 연구소기업 및 첨단 기술기업, 창업기업의 당해연도 일자리 창출 인원
투자연계	5억원	138억원	10억원	특구육성사업*, 특구펀드를 통해 발생하는 당해연도 직접투자 및 투자연계 금액

## 다. 특구진흥재단 출연 적정성 검토

-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R&D 특구로 특화된 흥릉특구는 기술창업 활성화와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을 위해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 도입, 기술이전, 관련 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있음.
- 강소특구 사업은 특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육성사업(기술상용화지원)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특구진흥재단은 2023년도 국비 20억원에 대한 서울시 분담금 9억원<sup>5)</sup>을 요청함.
  -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<sup>6)</sup>과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<sup>7)</sup>에 근거를 두고 있음.
- 과기부와의 협약과 조례에 따라 강소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의 사업재원 분담 출연은 적법하고 타당함.
- 다만, 올해 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통보(20%

5) 「흥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」 제5조제1항제3호제가목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육성(R&D) 예산의 국비 총액대비 지방비 20% 이상을 사업 재원으로 분담해야함.

6) 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7) 제18조의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

이상→ 40% 이상)에 따라 서울시 부담금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함.

### <홍릉 강소특구 사업 성과목표 및 실적>

(단위: 백만원)

출연금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국비	6,000	4,000	2,000	2,000	2,000
지방비	1,200	1,700	900	900	900
국비 대비 지방비(%)	20%	42.5%	45%	45%	45%

- 향후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협약체결 시 세밀한 검토와 사전 조율로 갑작스러운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.
- 한편, 강소특구사업 특례 사항으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<sup>8)</sup>에 따라 조례로써 특구 내 기업의 지방세 감면지원이 가능하나,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입법 보완이 요구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박은샘	02-2180-8064

8)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.  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,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